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302251(본소), 2022다302268(반소) 판결 [계약금 반환
청구 ·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302251(본소), 2022다302268(반소)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나63539(본소), 2021나63546(반소)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0가단110963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뉴탑

담당변호사 김중석, 노갑식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B

판결선고 2023. 3. 30.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나63539(본소), 2021나63546 (반소)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40,000,000원에 대한 2021. 8. 21.부터 2022. 11. 10.까지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N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20차전2157호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를 상대로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 등을 구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2020. 5. 6. 그 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함에 따라 위 사건은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나. 제1심에서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면서 본소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20.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주문에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2020. 4. 28.로 기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다.

다. 원심은 피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였으나 본소 중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7.부터 2022. 1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판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이 정하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고 풀이되므로, 결국 위와 같이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가 아니한가의 문제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위 인용금액에 대하여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툰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61567 판결 등 참조).

나. 2020. 5. 7.부터 2021. 8. 20.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본소 청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5. 7.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8. 20.까지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판결경정 내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2021. 8. 21.부터 2022. 11. 10.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이 사건 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가)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의 원금이 40,000,000원이라고 인정하였고 이는 제1심에서 인정한 원금과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구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정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5. 7.이 아니라 2020. 4. 28.로 기산일을 잘못 기재하였다.

다) 원심은 위와 같이 오기임이 명백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2020. 5. 7.로 정정하였을 뿐 제1심이 인정한 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런데도 원심은 본소 청구와 관련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인 2021. 8. 21.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2. 11. 10.까지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40,000,000원에 대한 2021. 8. 21.부터 2022. 11. 10.까지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인 2021. 8. 21.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2. 11. 10.까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위와 같이 파기자판하고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 주 심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석준